

Korean Tax Update

August 2018, Issue 50

[조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보기\]](#)

1.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 (안 제38조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환급) 가능하도록 함.

*소득세(제1항) 및 법인세(제2항)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통보 기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안 제50조제4항)

(3) 가산세 기준 금액 명확화 (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시 지방세관계법 상 가산세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제외함.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지방세관계법 상 이자 상당 가산액을 포함함.

(4)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 시 정당한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안 제55조제3항, 제60조제10항)

(5)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등 (안 제84조제1항 및 제3항)

-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세금 탈루혐의의 해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연장 사유를 신설함.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

(6)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통지의무 강화 (안 제85조)

- 국세입법례를 참조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사유에서 폐

업의 경우를 제외시킴.

(7)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안 제112조)

2.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안 제13조제5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 중과세 전환 또는 감면 추징 시 신고납부 기간(현행 30일)이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60일)과 불일치하여 해당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킴.

(2)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안 제20조제4항)

- 등기접수일인지 등기처리일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현행 '등기 전 까지')을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접수일까지'로 명확화

(3)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규정 신설 (안 제100조제3항, 제103조의27제3항)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4)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제103조의3)

-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전출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한 변경사항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세율에도 반영함.

(5)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안 제103조의63제3항)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종도 매도시 기 공제세액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6)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안 제107조제2항)

-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국내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화.

3. 지방세특례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축소 연장 (안 제31조의4)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함 (현행 모든 부동산, 100분의 30)

-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4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현행 60제곱미터 이하 100분의 50, 85제곱미터 이하 100분의 25)

(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감면 축소 연장 (안 제65조)

-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함

(3) 기업합병 구조조정에 대한 감면 일부 축소 연장 (안 제57조의2)

-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소 감면함.
- 금융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은 일몰 종료

(4)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축소 연장 (안 제73조의2)

- 수익사업 등 용도로 장기 무상사용권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해당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에 따른 증과세율 배제 연장 (안 제180조의2)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18.8.28.(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당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를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을,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로 소급적용시기를 단축하였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형과 과태료를 차액 병과하고자 했던 당초안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벌금액을 하한 수정함. 한편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18.8.24.(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①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화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 등의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②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산출 근거를 마련함.

국세청,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전문보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19부터 금년 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의 규정이 요구됨. ①개정령 시행일은 8.7이나 7.19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적용일(7.19)부터 시행일(8.7) 전일까지 개정전 세율로 반출된 물품과 ②7.19 현재 제조자와 도소매업자의 하치장, 대리점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물품 중 10.5 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관련된 개별소비 환급(공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함.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 명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 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 명이 포함되었음.

[예규·판례]

[판례 1]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의 기산일

광주지법 2018. 8. 16. 선고 2017 구합 12223 판결

-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 제 1 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퇴직금'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소득은 법정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속인 점을 참작하고,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1]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서 4327 외 3 건, 2018. 6. 29.

-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배분된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는 1년을 온전히 사업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된 금액이고, 분할된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도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상당하는 분만 산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점,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 후단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를 곱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산정과 관련하여 제4항의 계산식 후단 부분이 분할 이후의 개월 수로 안분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2]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 외국 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5 중 1147, 2018. 7. 5.

- 청구법인이 쟁점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조세가 원천징수된 후, 해당 쟁점국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 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서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국외국법인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3] 쟁점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을 2003년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중 1687, 2018. 7. 9.

-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신청일이 2003년 개정전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시행시기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8.1. 등기된 쟁점 증자에 대하여 개정전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7년간 100%, 5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한 것이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5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증자는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축소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2005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은 증자시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준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조세감면을 증자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로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증자는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4]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 구 4071, 2018. 7. 10.

- 청구법인이 27.3%와 40.7%의 지분을 보유한 쟁점캐나다법인주주①·②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쟁점캐나다법인들은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바 법률상·계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처분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으며, OOO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25 퍼센트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5]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구 4222, 2018. 7. 17.

-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사실이 있고,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특수관계법인이 자본잠식인 상황에서 주식 전환을 감행하고 이를 다시 양도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해당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 9 호의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7 호, 제 7 호의 2, 제 8 호 및 제 8 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 6]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전 2266, 2018. 7. 19.

-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민사판결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 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7]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중 0279, 2018. 7. 20.

- 청구법인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OOO 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사가 적립하였다가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신용 카드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8]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 부 2759, 2018. 7. 31.

-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민사판결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 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9] 특수관계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6 서 0406, 2018. 8. 1.

- 그룹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상표권 등록 및 간접비용 등을 부담하고, 직원을 특수관계계열사의 경영기획실에 파견하여 브랜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연평균 그룹홍보비보다 6.6 배로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특정 계열사만이 아닌 전체 계열사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상표권 가치 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따른 이익 정산을 인적 분할 이전에는 공동광고선전비 명목 등 비용분담방식으로 정산하다가 분할 이후에는 브랜드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용료 수취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동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사용료율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례 10]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조심 2018 지 0526, 2018. 8. 1.

- 「지방세법」 제 9 조제 2 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

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 두 6977 판결)인바, 용도폐지되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도로)가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조심 2017 지 619, 2018.4.18.).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11]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 중 4353, 2018. 8. 9.

-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건 금액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위약금 할인율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예규 1] 바이오의약품 CMO 서비스 공급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2018. 6. 19.

- 바이오의약품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한 후 해외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제약사에 공급하는 해당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해당 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C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예규 2] 「관세법」 제 31 조에서 제 3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2018. 6. 27.

-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 31 조에서 제 3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2 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 35 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예규 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 7. 4.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고,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 그 증자분과 관련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 121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1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국투자가가 증자 전에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같은 조 제 1 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과,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 분의 100 을,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 분의 50 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예규 4]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2018. 7. 19.

-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설비를 질의법인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5]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 7. 23.

- 자원보유국가의 정부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과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예규 6]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 7. 23.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 76 조제 9 항 제 4 호가목에 의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예규 7]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세제-9901, 2018. 7. 27.

-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등의 취급 시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지급하는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인 대출취급수수료 및 대주단의 구성 등 타인자본 모집 및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주선수수료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이며, 토지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점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8.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제 15 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 57 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예규 9]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도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84, 2018. 8. 22.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 2조에서는 “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따로 구분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4 조제 3 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해왔음. 이후 2017.2.8.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이에 따라 구 지특법 제 74 조제 3 항 취득세 감면규정의 “주택재개발사업”도 “재개발사업”으로 용어가 조정됨. 그러나 해당 조정은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지특법 제 181 조)를 거치지 않은 단순 자구조정에 불과한 바,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전·사후관리절차(지특법 제 181 조)를 거쳐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즉 구 도시정비법 제 2 조제 1 조나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서비스 R&D 세액공제 확대해야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